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919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자본시장과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4.7.10			ょしつ	제418회 국회(정기회)				
금융투자업에	2201551		상정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관한 법률	2201551		2024.7.10.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자본시장과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금융투자업에	2202198	정부	2024724	6,8,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관한 법률	2202190		\(\frac{3}{7}\)	787	% ⊤	78T	3丁	부 2024.7.24.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자본시장과				소	위원회 직접회부(2024.11.22.)					
금융투자업에	2204922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강명구의원 등	2024.10.25.	소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관한 법률	<u> </u>				2024.10.20.	소귀 심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			
일부개정법률안					音小り	百七百八/川江 1 전의(2024.11.20.)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5.) 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24. 12. 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160조제2항 신설).

- 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함(안 제161조제1항).
- 다.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3항).
- 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4항).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를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환사채권, 교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 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1조의2제1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 다) 및 그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를 "말일부터 45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을 "정관 또는 이사회"로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각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라고, 같은 조 제4항각호 외의 부분 중 "10만분의 1"을 "1만분의 1"로 한다.

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0조 후단"을 "제1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최초로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이 법 시행 당시 제16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으로 남은 법인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일까지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1	n _1 ,1
현 행 	개 정 안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
출) (생 략)	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
	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
	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
	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u>다</u>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 ~ ⑤ (생 략) 세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

				1	다음
날까지(저				_	
사실이 별					
제9호의					
발생한 다					
 <u>1</u> 주 전 :	가운데	먼저	<u> </u>	-래	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 8. (현행과 같음)
- 9. 전환사채권, 교환사채권, 또 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

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 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저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 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u>제1</u>
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
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
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u>한다)</u>
②
<u>사업보고서등</u>
·
세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u>사업보고서등과</u>
<u>그 첨부서류</u>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
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
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
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
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
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
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
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
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 4. (생 략)
- ② ~ ⑤ (생 략)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u>관한 특례)</u> ① · ② (생 략)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 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 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u>사</u>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u>관한 특례)</u> ① · ② (현행과 같음)

3	 	 	
			,

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 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 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 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 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 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경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 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u>다)의 제출기한 연장</u>
제160조제1항에 따른
⚠ (청체회 기·Ó\
④ (현행과 같음) 제165 곳 이12(이이베다이 트게) ①
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이사회 결의일부터 <u>20일</u>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정</u> 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 ⑨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
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
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개월
<u>정</u>
관 또는 이사회
<u>.</u>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
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 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 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아나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u>100분의 10(10억</u>
<u>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u>
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
<u>억원)</u>
1. <u>제159</u> 조, 제160조 또는 제16
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u>하는</u>
- - 2. <u>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u>
- - 2. <u>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u> 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4)

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⑤ · ⑥ (생 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2. (생략)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 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u>1</u> 만분의 <u>1</u>
1.•2. (현행과 같음)
5 · ⑥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1111 11(三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 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 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 로 하는 자 가. ~ 사. (생 략) 14. ~ 29. (생 략)

제160조제1항 후단
가. ~ 사. (현행과 같음)
14. ~ 29. (현행과 같음)